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46~46p 5~6줄	문제-보기(지문)	**'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'는**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. (O) **기출 23**	**'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'는**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. (O) **기출수정 23**
49~49p 1~15줄	문제-보기(지문)	3.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**경찰청장 또는 시·도 경찰청장은**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(○) 기출 23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·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(×) 기출 18 **경찰청장 또는 시·도 경찰청장은**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및 경비업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(○) 기출 17·14 시·도 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 (○) 기출 16·15 **경찰청장 또는 시·도 경찰청장은** 경비업자가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여 경비업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 (○) 기출 13 **경찰청장 또는 시·도 경찰청장은** 경비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 채용이 적발되어 경비업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 (○) 기출 13 경비업의 영업허가는 경찰청장 또는 시·도 경찰청장이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다. (○) 기출 12	3.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**시·도 경찰청장은**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(○) 기출 23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·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(×) 기출 18 **시·도 경찰청장은**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및 경비업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(○) 기출 17·14 **시·도 경찰청장이**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 (○) 기출 16·15 시·도 경찰청장은 경비업자가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여 경비업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 (○) 기출 13 **시·도 경찰청장은** 경비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 채용이 적발되어 경비업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 (○) 기출 13 경비업의 영업허가는 경찰청장 또는 시·도 경찰청장이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다. (○) 기출 12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